

미래당중앙당후원회 정관

[개정 2020년 2월 25일]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'미래당중앙당후원회'라 칭한다. (이하 "후원회"라 한다.)

제2 (목적) 본 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후원회지정권자 미래당 중앙당에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 소재지) 본 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에 둔다.

제 2 장 회 원

제4조(회원) 정치자금 기부제한 자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자유의사에 의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5조(가입과 탈퇴)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후원회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탈퇴는 탈퇴원서를 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6조(회원의 제명) ①회원으로서 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명할 수 있다.

②회원의 제명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총 회

제7조(구성)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8조(총회의 기능) ①총회는 후원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.

1. 후원회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, 의결
2. 후원회 대표자의 선출
3. 정관의 제정 및 개정
4. 사업보고의 승인
5.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
6.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
7. 기타 후원회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, 의결

②총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는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③총회는 그 기능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총회소집) ①총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가 이를 소집한다.

제10조(의결정족수)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회원은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②가부동수인 때에는 대표자가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11조(구성) ①총회의 수임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'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'

③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, 위원장은 후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.

④운영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, 운영위원장의 사퇴 혹은 궐위 시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. (추가)

제12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, 의결
2.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대표자 직무대리자의 선출 및 총무 선임
5. 업무보고의 승인
6. 회원의 제명 결의
7.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, 의결

제13 (회의소집)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의결정족수)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5 장 임 원

제15조(대표자) ①후원회에 대표자(회장) 1인을 둔다.

②대표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③대표자는 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④'대표자의 궐위시 운영위원장이, 운영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'

제16조(총무) ①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무를 둔다.

②총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하고 대표자를 도와 후원회사무를 총괄한다.

제17조(회계책임자) ①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대표자가 선임하며 총무를 겸임할 수 있다.

②회계책임자 사고시에는 「정치자금법」에 의한 회계사무보조자가 위임받은 회계지출만을 하여

야 하며, 대표자는 지체없이 새로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제18조(감사) ①후원회의 회계 및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.

②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제 6 장 후원금 모금 및 기부

제19조(회비)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제20조(후원금 모금 등) 후원회는 「정치자금법」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.

제21조(모금의 제한) 본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「정치자금법」상의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2조(기부) ①후원회는 지정권자(미래당중앙당)에게 「정치자금법」의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까지 기부할 수 있다.

②본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. 이 경우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기부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제 7 장 해 산

제23조(해산) ①후원회는 다음 사유가 생긴 때에는 해산된다.

1. 후원회지정권자가 지정을 철회한 경우
2.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
3.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경우
4. 기타의 사유발생시 후원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24조(잔여재산 처분)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「정치자금법」 제21조에 의하여 처분한다.

제 8 장 정관개정

제25조(개정)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임사항) 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할 수 있다.